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011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(남양주양정역세권 S-4BL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S-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남양주양정역세권 S-4BL 공공주택 건설사업
2. 사업시행자
 -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
 - 사업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70-1 일원
(남양주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S-4BL)
 - 사업면적 : 51,737.00㎡
 - 대지면적 : 51,737.00㎡
 - 연 면 적 : 158,265.87㎡
 - 사업규모 : 아파트 14개동(공공분양 1,091세대, 지하2층~지상20층) 및 부대·복리시설
 -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4. 사 업 비 : 454,717,400천원 (주택도시기금 68,545,000천원)
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고시일 ~ 2031. 07.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,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(1600-1004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